

4. 검토요지

현행 서울사랑시민상은 봉사부문 등 8개 부문별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부문별 대상, 본상, 장려상이 있고 시민대상 총원은 223명, 시상금액은 6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본 개정안은 시상대상 총원 235명, 시상금액 8억 6천 1백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가. 안 제2조 제1항 6호(시상부문 및 인원) 신설

-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과 단체에 수여하는 서울사랑시민상에 대하여 봉사·문화·환경·복지 등 8가지 분야 부문 외에 여성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양성평등주의 실현이나 여권을 신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 시상인원은 문화부문의 대상 1명을 삭제하고 대신 본상에 1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조정하였고, 복지부문에는 다른 부문의 시상인원을 고려하여 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하여 총 6명으로 하였으며
-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대상은 양성평등·사회참여·경제활동·보육·건강가정 등 5가지 세부분야 유공자에 대해 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안 제4조 제1항 4호(시상방법 및 시기) 개정

- 복지부문 시상방법과 시기를 복지자원봉사·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9월 7일)와 장애극복자 분야로 세분하여 장애인 시상은 장애인 주간(4월 20~4월 26일)에, 또한 여성부문 시상은 여성주간(7월 1일~7월 7일)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다. 안 제9조(시상금 등) 별표의 개정

- 문화부문의 시상금 중 본상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상금액과 같게 한 것은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통합조례 제정 당시 수정의결안에 반하고 또한 시상금액을 종류별로 차등 구분한 의미가 없음.

※ 현행 부문별 시상금 내역

(단위:천원)

부 문 별	종 류 별			비 고
	대 상 (11명)	본 상 (57명)	장려상 (155명)	
봉사부문	12,000	7,000	5,000	
문화부문	10,000	7,000	-	
환경, 복지, 교통, 건축, 토목부문	10,000	5,000	3,000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성부문

제4조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지부문

가. 복지자원봉사·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 : 9월 7일

나. 장애극복자 분야 : 장애인주간(4월 20일~4월 26일)

6. 여성부문 : 여성주간 (7월 1일 ~ 7월 7일)

별표1중 문화부문의 대상란 “1”을 삭제, 본상란 “13”을 “14”로 하고, 복지부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란 다음에 여성부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계의 계란 “223”을 “235”로, 대상란 “11”을 “12”로, 본상란 “57”을 “62”로, 장려상란 155“를 ”161“로 한다.

복지부문	10	1	3	6	3개 분야 (복지자원봉사, 후원자, 종사자)
	6	1	2	3	1개 분야 (장애극복자)

여성부문	6	1	2	3	5개 분야 (양성평등, 사회참여, 경제활동, 보육, 건강가정)
------	---	---	---	---	---------------------------------------

별표 2중 문화부문의 대상란 “10,000”을 삭제하고, 본상란 “7,000”을 “10,000”으로 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란 다음에 여성부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성부문	10,000	5,000	3,000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